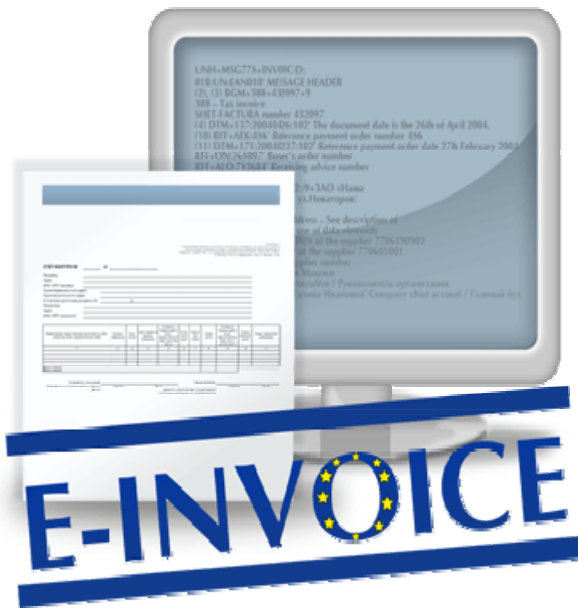


##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 에 대한 확정 시행령 (Decree 119/2018) 발행 공지 Special Newsletter 9 월호 & SMARTBOOK Software Support



고객사 및 독자 여러분,

S&S 회계법인의 스페셜 뉴스레터 9월호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해당 호에는 1년여 만에 통과된 **e-INVOICE에 대한 확정 시행령 (Decree 119/2018)** 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가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 이메일 :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District 1, HCMC, Vietnam

Tel: 84 (28) 39 104 996

Fax: 84 (28) 39 104 998

**Hanoi Branch:**

7th Floor, Vinaconex 9 Building, Pham Hung St., Me Tri Ward, Tu Liem Dist, Hanoi, Viet Nam

Tel: 84 (24) 62 512 199

Fax: 84 (24) 62 512 201

Web site : <http://www.ssaudit.com>

유용한 정보가 되기 바라며, 본지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회계법인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INVOICE 에 대한 확정 시행령 공표 (Decree 119/2018/ND-CP)**

수년전부터 초안으로 제안되었고, 2018년 중 시행 예정이었던 e-INVOICE에 대한 시행안이 지난 9월 12일 베트남 정부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Decree 119/2018/ND-CP는 2018년 1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전자 세금계산서 (e-INVOICE) 사용은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부분의 기업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 e-INVOICE 시행령의 주요 사항 요약:**

- 세무서의 확인 코드가 없는 E-INVOICE 사용은 특정 산업의 기업 (전기, 원유, 통신, 운송, 금융서비스, 보험, 이커머스, 슈퍼마켓, 기타 무역 관련 업체)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됩니다.
  - ✓ 세무서와 전자적 수단으로 통해 신고 및 정보교환을 하는 업체로서,
  - ✓ 정보통신 인프라, 회계소프트웨어, e-INVOICE software를 규정에 근거하여 보유하는 업체
- 기타 일반 기업, 경제 조직체 및 기타 세무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모두 세무서의 확인코드를 득한 e-INVOICE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E-Invoice 사용 이전 (세무서의 확인코드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 기업은 국세총국 (GDT)의 웹포털을 통하여 세무서에 사용을 등록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E-Invoice는 e-INVOICE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의 E-invoice 시스템으로부터 발행되는 것으로, 판매자가 전자 서명을 하여 이를 발행하게 됩니다. 세무서의 확인코드를 사용하는 E-INVOICE의 경우, 이는 GDT의 web portal을 통해 등록되며, 발행시 이는 전자적으로 서명되어 전송됩니다. E-INVOICE는 양 당사자가 동의한 전자적 수단 (대부분 E-mail)을 통하여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 해당 시행령에서는 이전 시행령에서 표시한 200,000 VND 이하의 구매 행위에 대한 인보이스 발행 유예 (소매점의 경우) 내용이 삭제된 바, e-INVOICE 시스템에서는 각 구매행위에 대하여 인보이스 발행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동 중인 제품에 대하여, 관계당국은 GDT의 web portal을 통해 해당 e-INVOICE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동 중인 제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쇄 인보이스는 더 이상 요청되지 아니합니다.
- E-invoice는 Accounting 규정에 따라 확인 및 기록을 위하여 Paper Invoice로 변경 인쇄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변경 인보이스는 거래나 지불을 위한 법적 문서가 되지는 아니합니다.
- 해당 시행령의 발효에 대한 이행기간 (Transitional Period) 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해당 시행령 이전 E-INVOICE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세무서의 확인코드 유/무 무관), 사용중인 E-INVOICE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자가세금계산서, 인쇄인보이스, 세무서로부터 구매한 인보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시행령 발효로부터 24개월 이내 해당 인보이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 이후 전체 E-INVOICE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 ✓ 공공기관 (학교, 클리닉, 기타 기관) 으로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계속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기관의 E-INVOICE 사용 여부는 향후 제시되는 재무부 (MOF)의 시행안에 따르게 됩니다.

**\* e-INVOICE 시행령의 구체 내용:**

**I.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업체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기업, 개인으로서 아래의 대상을 포함합니다.

- a) 베트남 기업법, 금융법, 보험법, 증권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한 기업으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법인 일체
- b)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공 기관 및 비영리 기관
- c) 경제협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조직
- d) 기타 조직
- e) 가정사업체 및 개인

**II.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

- 1. 부가세 공제법을 사용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시 발행되어야 하는 부가세 인보이스 (VAT Invoice). 해당 부가세 인보이스는 POS 시스템 (Cash Register system) 으로부터 근거하여 세무서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 2. 부가세 직접법을 사용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시 발행되어야 하는 판매 세금계산서 (Sales Invoice). 해당 Sales Invoice 는 POS 시스템 (Cash Register system) 으로부터 근거하여 세무서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 3. 기타 형태의 인보이스. 전자 발행 스탬프, 전자 티켓, 전자 영수증, 전자 운송장, 기타 해당 시행령 6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일체.

**III.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및 적용시의 대표 이슈**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 (해당 시행령 12 조 6 항에 제시된 가정사업자 및 개인을 제외) 는 세무서로부터 인증코드를 받은 경우/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문하고, 세무서로부터 규정된 Form 에 따라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보이스는 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각 판매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에 무관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판매시, 판매자가 POS system (Cash Register) 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작성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등록되어야 하고, 이는 세무서와 데이터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2018 년 11 월 1 일부터, 전 시행령에서 규정한 200,000 VND 이하의 인보이스 발행 면제 여부가 폐지된 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에 상관없이 판매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건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세무서로부터 확인코드를 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 세무서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등록 코드를 부여받는 것으로서, 이는 POS system 에서 직접 세무서로 데이터가 연동되어 작성되는 인보이스 발행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세무서로부터 확인코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의 등록코드 없이 회사가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하며, 이는 POS system 에서 직접 세무서로 데이터가 연동되어 작성되는 인보이스 발행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 **세무서로부터 확인코드를 받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시행령 119 번 12 조)**

- Enterprises, economic organiz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shall use electronic invoices with codes of tax offices when selling goods or providing services,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each sale of goods or provision of services.
- Enterprises, economic organization, other organization are high-risk about tax, they must still use electronic invoices with code of the tax,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each sale of goods or provision of services.
- Business households and individuals keep accounting books, regularly using 10 or more laborers and earning a turnover of VND 3 billion or more in the preceding year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industry, construction or 10 billion or more in the commercial and service field, that must use electronic invoices with codes of tax offices;
- Business households and individuals are not subject to mandatory, but when making accounting books, the electronic invoices with the tax office's code are also applied.
- Households and individuals are doing business in the field of restaurants, hotels, retailing consumer goods, western medicines, providing services directly to consumers in some convenient locations where the code of the tax authorities is originated from the cash register connecting with the tax authorities from year 2018.

● **세무서로부터 확인코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시행령 119 번 12 조)**

- Enterprises operating in such fields as electricity, petroleum, post and telecommunication, transportation, clean water, finance, insurance, health care, e-commerce, supermarket, commercial and business enterprises that have or will deal with the tax authorities by electronic means and have accounting software systems that meet the requirements may use electronic invoices without code of the tax.
- However, if enterprises, economic organization, other organization are high-risk about tax, they must still use electronic invoices with code of the tax,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each sale of goods or provision of services.

● **세무서가 발행하는 (무료)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대상**

- Households and individuals doing business that do not satisfy the conditions must use electronic invoices with the code of the tax office (not make accounting book or employees under 10 people, or a turnover of VND 3 billion or more in the preceding year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industry, construction or 10 billion or more in the commercial and service field) but must have invoices for delivery to customers or in cases where enterprises or business organizations Other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tax office to issue e-invoices to the customers, shall be issued with electronic invoices by the tax office with the tax office's identification number on each occasion of their arising. The tax offices shall issue electronic invoices on each occasion according to form No. 06 in the Appendix to this Decree.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HCMC.

Tel: 028-39104.996-3910.4997

Fax: 028-3910.4998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Website: [SSAUDIT.COM](http://SSAUDIT.COM)

## IV.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시, 이전 인쇄 계산서의 취소 방안

현 시행령은 세무서로부터 확인코드를 받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시점으로부터, 해당 기업 / 경제조직체 / 가정사업자 및 개인에 대하여, 미사용 인쇄계산서를 반드시 취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4 조 3 항).

인쇄 세금계산서의 취소절차는 재무부 시행규칙 39/2014/TT-BTC 에 따르며, 세무서에 신고 이후 30 일 이내 해당 인쇄 인보이스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 V. 전자세금계산서의 하드카피 Voucher (종이서류) 변환 방식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시행령 119 번 10 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종이 바우처로 변경 인쇄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해당 변경 인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서류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종이서류로 변경되어 인쇄될 때, 이는 회계장부 기록의 목적으로서만 보관되며, 이는 결제 및 거래의 증빙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인보이스가 POS system 에서 발생되어 세무서와 직접 연동된 케이스는 예외로 합니다.

## V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오류시 세무서 보고 사항

세무서로부터 확인코드를 발행받은 것으로서 전자 세금 계산서가 구매자에게 발송되기 이전 오류를 발견한 경우, 판매자는 이를 즉시 세무서에 통지하여 인보이스를 취소하고, 새로운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서로부터 확인코드를 발행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가 기 구매자에게 송부된 채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 각 당사자는 해당 오류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인보이스를 취소하고, 새로운 인보이스를 발행 대체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 VII. 세무서로부터 (무료)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세무서 발급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Households and individuals doing business except business households and individuals have a turnover of VND 3 billion or more in the preceding year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industry, construction or 10 billion or more in the commercial and service field.
- Small and medium start-up, and business households and individuals transform into enterprises within 12 months from when the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operatives and individuals doing business in difficult or extremely difficult areas;
- Oth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t the request of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excluding enterprises operating in economic zones, export processing zones, industrial parks or hi-tech parks;
- Other objects decid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VIII. 정보공개 협조 의무**

해당 시행령 26 조는 금융기관, 상업은행 및 정기적인 지불 기능을 가진 업체는 재무부에 의해 규정된 표준 형식에 따라 세무서에서 개인 및 기관의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 거래 전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IX. 전자세금계산서의 시행 일정 (Trasition Period)**

해당 시행령에서 베트남 정부는 모든 기업, 경제 조직, 가정사업자 및 개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완료 일정을 최대 2020 년 11 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2018 년 11 월 1 일부터 2020 년 10 월 31 일까지, 해당 시행령 및 구 시행령 51/2010/ND-CP, 04/2014/ ND-CP 은 동시에 유효합니다.

기업 및 경제 조직, 가정사업자 및 개인으로서, 인쇄 인보이스 / 자가세금계산서 / 세무서 발행 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2020 년 10 월 31 일까지 사용이 허가됩니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강제되는 대상으로서 이행기간은 구체적으로 아래를 따릅니다.

**\* 01/11/2018 이전**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거나 기 등록된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01/11/2018 - 31/10/2020 (경과기간)**

- 세무서에서 확인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을 통지하였으나, 해당 적용에 기술적인 조건이 충분치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이전 인보이스를 사용할수 있으나 부록 03 번 및 부가세 신고 서식에 따라 세무서에 샘플을 송부하여야 함.
- 해당 기간 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로서,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권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적용에 기술적인 조건이 충분치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51/2010/ND-CP 에 따라 인쇄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음.
- 2018 년 11 월 1 일 이전 회사가 인쇄 인보이스, 자가세금계산서 및 세무서로부터 구매한 인보이스를 기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행령 51/2010/ND-CP 에 따라 인쇄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음.

**\* 2020 년 11 월 1 일 이후:**

- 모든 기업, 경제단체, 모든 기업, 경제 조직, 가정사업자 및 개인은 세무서로부터 세무코드를 받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변경을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시점부터 구 시행령 51/2010/ND-CP, 04/2014/ ND-CP 는 폐지됨.

**\* 특수 예외 경우:**

공공 교육기관, 병원 등 '영수증'을 사용하는 대상의 경우,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여부는 재무부 (MOF)의 이행 스케줄에 따라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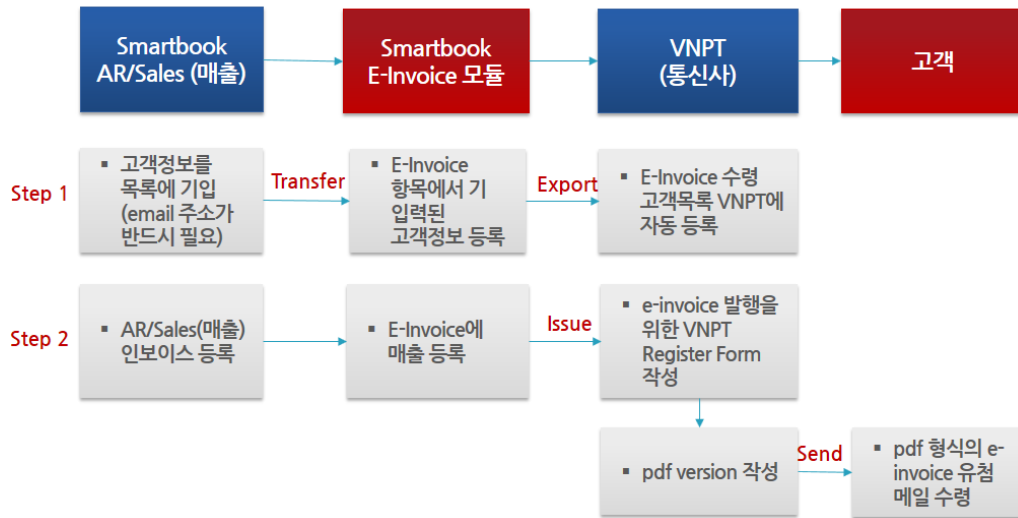
**\* SMARTBOOK 회계/인사 e-INVOICE 소프트웨어 소개**

SMARTBOOK 소프트웨어는 Web-base 회계, 인사, 재고관리 ERP 시스템으로서, 베트남 회계규정에 입각하여 지난 15년간 S&S 회계법인에 의해 개발되고 업데이트된 솔루션입니다. SMARTBOOK 소프트웨어는 Web base로 어디서든 회사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 데이터 수정 및 발급이 간단합니다. SMARTBOOK 은 베트남 내 회계 및 세무규정의 변화를 적시 반영하여 업데이트되며, **특히 본지에서 전달드린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100%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각 고객분들은 향후 2년 이내 E-INVOICE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하며, 궁극적으로 해당 E-INVOICE 발행 데이터와 가장 회계 프로그램이 연동되어야 하는 바, 당사에서 제공하는 SMARTBOOK 소프트웨어가 귀사의 현행 규정 준수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E-Invoice 발행은 SMARTBOOKS™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단계별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VNPT 통신사 제휴)



SMARTBOOK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 제공되는 Brochure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회계법인으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